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Section V \_ 장애인분과 세미나

| 일시 |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2:00 ~ 오후 5:00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대성전 제1출입구)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장애인분과

## 인/사/말



김삼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 차

발표 1   .....	9
“교회 장애인부서의 현황과 과제”	
_ 김해용 목사(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 논찬	
_ 장상주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발표 2   .....	20
“기독교장애인선교현장에서의 인권문제의 조명”	
_ 이계윤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 논찬	
_ 정권 목사(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발표 3   .....	81
“금년 말 만료되는 신고시설의 문제”	
_ 이계윤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 논찬	
_ 박창진 목사(장애인 신고시설 협의회장)	
주제발표   .....	99
“장애인선교현장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_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논찬	
_ 윤형영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총무이사)	
종합토론	

#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 장애인분과 -

1. 일 시 : 2010. 10. 14(목) 오후 2:00 ~ 5:15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

####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13:45~14: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4:00~14:30	개회예배	인도_ 김광식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기도_ 이호구 목사(한국기독교농아인선교단체연합회 회장) 설교_ 이재서 총재(세계밀알연합)(설교시간은 14:05~14:25입니다) 축도_ 김용원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회장)
14:30~14:45	찬양	동영상 - 한국장애인 선교의 어제와 오늘 찬양 - 시각장애인 찬양 (양남규와 소리보기 ) 찬양 - 윤치경 목사(한국 장애인문화예술선교회 회장)
좌장 : 최대열 목사(명성교회)		
14:45~15:15	발표1	“교회 장애인부서의 현황과 과제” _ 김해용 목사(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논찬_ 장상주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5:15~15:45	발표2	“기독교장애인선교현장에서의 인권문제의 조망” _ 이계윤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논찬_ 정권 목사(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15:45~16:15	발표3	“금년 말 만료되는 신고시설의 문제” _ 이계윤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논찬_ 박창진 목사(장애인 신고시설 협의회장)
16:15~16:45	주제발표	“장애인선교현장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_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논찬_ 윤형영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총무이사)
16:45~17:15	종합토론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 기교회 장애인부서의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김해용 목사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 장애인교회학교 현황과 과제

**김해용 목사**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장/사랑의교회 협동목사]



한국장애인사학연구소

## 발달장애인 교회학교 상황진단



범씨는 빛이 없어도,  
산소가 없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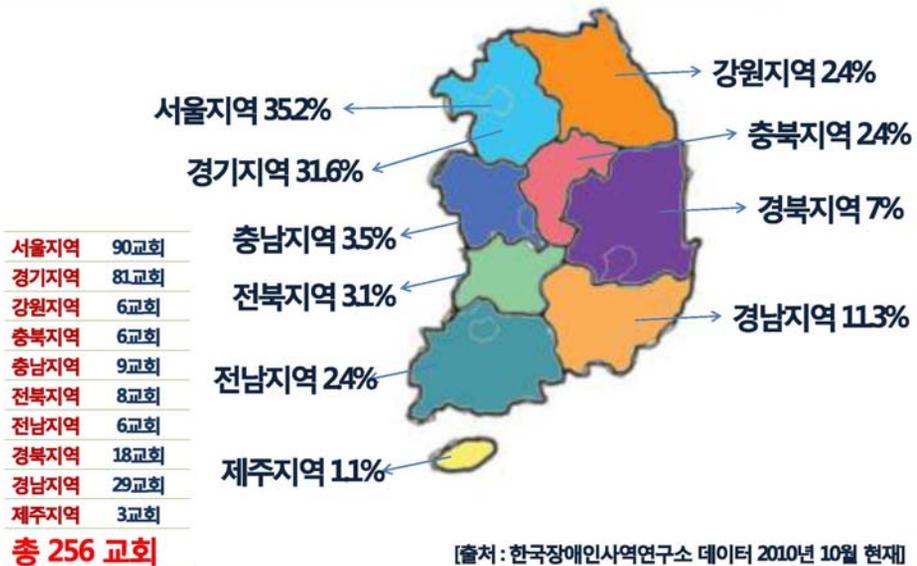
**80% 이상** 발아한다

그러나

초엽이 나오고 벼알(쌀)이 생기기까지  
빛의 온도, 물, 공기, 피 제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 01. 장애인 교회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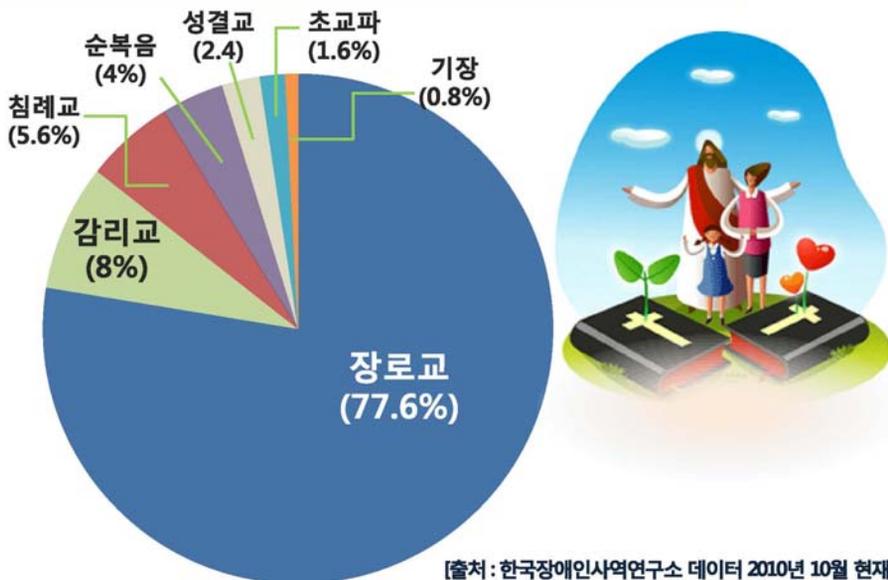
## 장애인 교회학교 지역별 현황



## 장애인 교회학교 해외 현황



## 장애인 교회학교 교단별 현황



## 장애인 교회학교 성장 현황



[출처 :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데이터 2010년 10월 현재]

## 장애인 교회학교 형태별 현황

<b>통합 모델</b>	남서울은혜교회 예수마당, 마산문창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산성교회, 수원은혜교회, 고신대학교대학교교회, 임마누엘교회, 하나비전교회, 함께하는교회, 함께가는 교회 등	<b>[12개 교회]</b>
<b>부분통합 역통합 모델</b>	광주동명교회, 명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대림교회, 서대전교회, 수봉산교회, 순복음도봉교회, 새문안교회, 춘천소양성결교회 등	<b>[9개 교회]</b>
<b>독립 부서 모델</b>		<b>[233개 교회]</b>
<b>독립 교회 모델</b>	가버나움 교회, 노원 순복음 장애인교회 등	<b>[2개 교회]</b>

## 02. 장애인 교회학교 성장원인

### 장애인 교회학교 성장원인

#### ❑ 장애인 교회학교 모델제시



>>사랑의 교회 사랑부 예배현장<<

## 장애인 교회학교 성장원인

### 장애인 교회학교 운영지원



>>지도자세미나<<



>>캠프세미나<<

## 장애인 교회학교 성장원인

### 교회학교 사역자의 열심



>>정책간담회<<



>>사역훈련원<<

## 장애인 교회학교 성장원인

### ❖ 담임목회자의 의지와 지원



>>홍정길 목사님<<



## 장애인 교회학교 성장원인

### ❖ 모범적인 교회의 참여

갈보리교회



명성교회



수영로교회



## 03. 장애인 교회학교 과제

### 장애인 교회학교의 문제점 10가지

#### 외부적인 문제점

- >> 교회가 장애인(사역)에 대한 부정적, 편견적,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 >> 교회가 장애인사역에 대하여 선택적,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 교회가 장애인 신앙지도와 예배, 교육환경 마련에 관심이 부족하다
- >> 교단이 장애인(사역) 정책과 성례에 대한 지침 마련에 관심이 부족하다
- >> 교회와 장애인선교기관과의 상호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장애인 교회학교의 문제점 10가지

### 내부적인 문제점

- >> 담당 교역자가 장애인선교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 >> 담당 교역자 및 교회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
- >> 교회학교의 연합과 협력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개교회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 장애인 교회학교 사역을 위한 다양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 장애인 교회학교의 활성화 5가지 대안

01. 교회학교의 초교파적인 연합과 협력사업
02. 교단의 장애인사역 정책의 변화와 활성화
03. 장애인 사역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는 목회
04.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
05. 다양한 종류의 교육자료 발간과 교육방안 제시

## 장애인 교회학교의 미래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

선교역사를 바르게 인식

희생의 자리에 앉는 지도자

교회의 협력과 건강한 목회 지향

# 기독교장애인선교현장에서의 인권문제의 조망

나사렛대학교 이 계 윤 교수

##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인간뿐이다. 이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신성성(神聖性)을 말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를 세상에서는 인권이요, 이에 근거하여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이 출현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4:11)”라고 말씀하셨다. 장애인을 만드신 하나님을 역설하는 부분이다. 즉 장애인은 불완전한 작품이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인 것이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창조의 작업을 수행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 즉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보이셨고, 장애인인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셨다. 나아가 장애인 사역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되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마지막 날에 변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존재임을 약속하셨다.

1984년 로제타 홀 여사가 한국 땅에 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이래 한국 기독교는 장애인 사역을 한국교회의 역사와 함께 감당해 왔다. 물론 지역교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 선교기관 혹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0년 이후 한국 교회는 지역교회 안에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선교신학의 이론적 정초를 쌓기 위한 작은 시도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아가 장애인 선교현장은 사회복지법인, 지역교회, 장애인 선교기관 형태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진보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다양화되고, 변화되고

현장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애인의 모습과 아울러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따른 인권의 내용과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장애인 선교 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 2. 전개하는 말

### 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 가진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으로 인정되는 존재가 갖는 권리이다. 그러면 누가 인간으로 인정되는가? 그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질문은 우문(愚問)인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들이 오랫동안 상당수 존재해왔음을 말하고 있다. 플라톤 시대에 사람은 “남자, 건강한 존재, 로마시민”에 국한되었다.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람의 수를 계상할 때에는 성인남자에 국한하였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민족 역시 인간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 인권을 소유한 인간의 범주는 과거 특정한 계급에서 시민계급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했다.

인권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내리는 경우, 인권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이는 권리를 자연권적인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즉,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천부인권설)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을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이들은 문화 및 경제영역에서의 언어적, 인종적, 소수자, 빈곤자, 주변화 된 집단 및 장애인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기도 한다. 이는 인권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문화적 전통 등 시대와 국가적 배경에 따라 강조되는 인권의 내용과 인권의 실행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 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진 도덕성의 기표이며(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성과 타고난 고유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적 특성을 가지며,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윤찬영, 2000).

그러나 인권에 대한 자연법적 전통에 근거한 주장과 달리 인권은 법적, 정치적 문서로 규정되어야만 하고, 규정된 권리만이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215년 대헌장(Magna Carter, the Great Charter)은 문서화된 인권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의 신대륙에서 1776년 6월 12일 선포한 헌법(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은 흔히 버지니아 권리 장전 또는 버지니아 권리 선언이 구체적이고 자연법적인 근거에 의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권리선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한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인민이 사회를 조직할 때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재산을 얻어 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여 획득하는 수단을 비롯하여 생명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다」 라고 선언한다. 1776년 7월 4일 채택된 미국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창조주로부터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도 마치 인권의 절대적 속성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장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박애 사상을 기초로 하여 대륙전체에 인권운동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기본적 가치는 광범위한 동의를 가지며,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oward and Donnelly, 1986).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변화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오늘날 사회의 현실에 맞게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인간으로서 법적 권리,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이 보장받고 그에 따라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천대상이 인간으로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모든 인간을 포함해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의 역할을 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 2) 인권 개념의 시대적 구분에 따른 이해

인권의 발달이 시민적 권리에서 경제·사회적권리, 연대의 권리로 인권 3세대에 걸쳐 발전되어 오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의 강조점도 [표 1]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Ife, 2000).

### (1) 인권 제1세대

인권 제1세대는 공민권과 정치권(Civil and Political right)으로도 지칭되는데, 이는 18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발달과 계몽주의에 그 지적 기원을 둔다(Galtung, 1994; Bobbio, 1996). 제 1세대 권리는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조직화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본적 자유에 관심을 집중한다. 제 1세대 인권은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공정한 재판과 법 앞의 평등, 공민권, 사생활의 보장, 자기표현의 권리,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의 권리, 시민생활과 사회활동에의 자유로운 참여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공공안전의 권리, 차별(종교적, 인종적, 성적 차별 등) 받지 않을 권리, 합법적 사업을 보호받을 권리, 협박, 희롱, 고문, 강요 등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기초하며, 이 권리들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 1세대 권리들은 흔히 자연권(natural right), 즉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서 우리 속에 내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Bobbio, 1996). 이 권리들은 부여되거나 획득되거나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방어되어야 할 성격의 권리인 것이다.

### (2) 인권 제2세대

인권 제2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로 알려진 권리들이다.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로서, 취업할 권리,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령기에 존엄 있게 대우받을 권리, 적당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제2세대 권리는 18세기 자유주의가 아니라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그리고 여타주의 운동에 그 지적기원을 둔다. 그러한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에 비해 서구의 주류 정치적 담론에서 잘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주류정치의 정당이나 이익집단 내에서 제 2세대 권리와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 정도에 대한 합의는 별로 없다(Chomsky, 1998; Beetham, 1999).

제 2세대 권리는 국가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로 지칭된다. 국가는 제 1세대 권리처럼 단지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급여를 통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능할 것을 요구 받는다. 제 2세대 인권실천은 직접적 실천, 조직적 실천, 정책개발, 연구와 행동 등으로 사회복지의 핵심 영역과 관련된다. 이러한 2세대 인권실천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노숙자들 혹은 주거보호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노인, 장애인, 요보호아동, 편부모 그리고 난민 등의 취약 층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을 확보해 주는 업무들 수행하는데 기본적 원칙이 된다. 그리고 제2세대 권리가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기본적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급여에 의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가 지니고 있는 사회민주적 이데올로기와 전적으로 일치하며 이는 적절한 서비스를 급여하는 것이 바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본다(Bryson, 1992; George & Wilding, 1994).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본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제 2세대 인권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며, 일상의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에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동시에 인권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3) 인권 제 3세대

인권 제 3세대는 집단적 수준에서 정의 될 때에만 의미가 통하는 권리들이다. 즉 제3세대 인권은 그 실현에 의해 개개인이 명백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개개인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국민,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되는 권리들이다. 이는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결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공기에서 숨 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 등과 같은 환경권을 포함한다. 제 3세대 인권을 조약과 협정으로 성문화하는 것은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제는 초보적 형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3세대 인권은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연대를 통한 환경권이 중요한 인권영역으로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의 측면이 발전되고 있다.

[표 1] 인권의 발전과 사회복지실천

	첫 번째 발전	두 번째 발전	세 번째 발전
명칭	시민적·정치적인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연대적인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발전 학문 (development studies); 환경 보존의 이데올로기
실례 (예)	투표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 고문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법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자유	교육권, 주택권, 건강권, 직업권, 적절한 소득권, 사회 보장권, etc	경제적인 성장과 번창의 권리,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이익,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etc
기관	법률 상담소, 국제사면위원회, 인권 감시 단체, 난민 노동(refugee work)	복지정권, 제 3섹터, 민간 시장 복지(private market welfare)	경제발전기관, 지역 프로젝트, 그린피스
주요한 것	법률	사회복지	지역발전
전문적인 사회복지 복지	옹호 : 난민 노동, 난민 보호소 (asylum seekers) : 교도소 개혁	직접적인 서비스 : 복지정권의 관리 : 정책발전과 옹호 : 조사	지역발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개인적, 영적인

#### (4) 인권 중심 접근의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접근했던 방식은 주로 문제해결중심(problem-solving basde)모델, 욕구기반(need-based)모델, 사회정의(social justice based)모델, 시민권기반(civil right) 모델, 자원중심(Resources based)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모델(community-based)들이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부각되면서 앞의 모델의 정당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초가 되는 접근이 바로 인권 중심의 접근(Human Rights based) 모델이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윤리에 있어서 제일순위에 해당되는 생명존중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며, 최근에 등장하는 생태체계적(Ecological-System)인 관점과 역량강화 모델(Empowerment model)에서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접근과 흐름을 같이 한다.

특히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상식적이고 선언적인 명제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명제로 변화시키는데 인권중심의 접근법이 그 지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다. 장애인 역시 기본적인 욕구(음식, 깨끗한 물, 거주지, 건강보호, 교육, 수입)와 심리사회적 욕구(친구, 다양한 관계,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지역사회 통합 등), 정치적 욕구(조직화, 자유로운 연대, 법률적 권리, 투표권)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의사소통과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Harris, 2003:28).

### 3) 인권의 특성

인권은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이다. 둘째, 인권은 보편적이다. 즉, 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로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셋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즉,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권리는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로는 첫째 생명이다. 인권은 생명과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이에는 육체적 생명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포함한다. 둘째, 자유이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각과 표현의 자유,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말아야 할 자유, 사생활과 거주이동의 자유 등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등이다.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출신지역, 종교, 빈부, 건강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넷째, 정의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마련하는 등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이다.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소수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4) 법률과 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내용

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Nihal Jayawickrama는 인권의 형식적 범주-자유권 또는 사회권-와는 무관하게 35개의 실제적인 권리로만 구분하고 있다<sup>1)</sup>. John S. Gibson은 국제사회권조약, 국제자유권조약과 기타 국제인권문서를 분석하여 △시민적인 (집회에 대한

1) Nihal Jayawickrama, 위의 책 참조. 그는 실제적 권리를 자결의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노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수형자의 권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피의자의 권리,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아동의 권리,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 평등에 대한 권리, 소수자의 권리, 노동관련 권리, 사회보장관련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적 생활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의 35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으로 간주하였다.

권리) △법적인(적정절차) △정치적인(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 △경제적인(노동에 대한 권리) △사회적인(건강에 대한 권리) △문화적인(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집단적인(민족자결에 대한 권리) △기타 모든 범주를 포괄하는(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로 구분한 뒤 이를 5개 범주로 구분했다<sup>2)</sup>.

[표2] 인권의 내용에 따른 실체적 권리

인권 범주	하위 범주	내용별 실체적 권리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노예금지 고문금지 법앞에 평등 차별금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명예/명성/정보통신/통신/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망명권 포함), 국적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정보접근권 포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발안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 원권포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복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 향유권(실권리 포함),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적 권리	가족형성권 적정생활수준향유권(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포함)
	문화적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 포함), 인권질서추구권
법절차 적권리	법절차 적권리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구제권, 인신보호,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권리

### (1)헌법과 관련법, 인권선언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 ①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통한 인권의 존중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2) John S. Gibo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996, Scarecrow Press, In③, Lanham, Maryland, US)를 참조, 그는 인권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법적인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집단적 권리 △선언적 권리로 분류하였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는 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5항‘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인권보호는 모든 법의 모체인 헌법에 대한 사항이며, 인권보장의 기본 핵심은 권리보장과 차별금지와 국가의 보호의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인권선언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법 질서 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승인하는 법규를 말하며, 예컨대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1949)이나, 집단 학살의 금지협정(1948), 부전조약(1928)등을 의미한다.

국제법의 개념에 의하면, 장애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천명한 국제법규는 그리 많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및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각종 국제법규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 규범은 쉽게 발견 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B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A규약)의 각 조항을 들 수 있으며, 인종차별금지협약(1996), 여성차별금지협약(1979) 및 아동권리협약(1989)등도 일차적으로 장애인에게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 국제연합은 회원국들이 여론과 관심방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선언(Declaration)을 채택하는데, 이 선언은 인간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진실을 나타내며, 매우 강력한 도덕적·윤리적 및 정치적 비중을 가지는 문서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보편적인 인권선언(1948)부터 시작하여, 정신지체인권리선언(1971)과 장애인권리선언(1975)등이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에 관한 대표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연합 이외에도 장애인의 고용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1955년에 장애인 직업재활권고(제99호), 1983년에 직업재활과 장애인 고용권고(제168호)를 채택하였다.

첫째 1948년의 국제인권선언은 UN이 1948년 12월 10일 제5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인간권리를 선언하였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모든 인간 속에 장애인도 포함됨은 당연하며, 장애인도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직, 질병, 신체장애, 배우자의 상실, 노쇠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에 처할 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장애인의 건강유지와 사회보장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신분 등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든지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7조에서 “모든 삶에 대하여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제22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71년 제26차 UN 총회에서 결의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으로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 다른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이들에게도 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사상의 표현이며, 이러한 제반 권리의 보장을 각국이 정책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신지체인은 최대한 실행가능한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

제2조 적절한 의료, 물리적 치료, 그의 능력과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사회복귀 및 직업소개에 관한 권리.

제3조 경제적 보장과 상당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제4조 생산적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

제6조 착취, 학대 및 모욕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6조)

제7조 자유의 제한에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절차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에 대한 적절한

법적 예방 장치를 포함하여야 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한 그의 사회적 능력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고, 정기적 심사와 상급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1975년 제30차 UN에서 결의한 장애인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으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장애의 개념을 생리학적, 해부학적 범주를 넘어 기능장애(impairment)에까지 그 영역을 넓힌 것으로 이후 많은 나라의 장애범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선언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 또는 정도에 상관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장애인 권리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은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이들 권리는 어떤 예외도 없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 자신 또는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별 또는 차별이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천부적인 권리로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누릴 최고의 권리.

- 장애의 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

- 일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넷째 1996년의 국제인권규약(A, B규약, 1996)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하나 존엄과 평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는 이상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창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각 규약은 제1조 제1항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그 권리에 의하여 자유로이 자신들이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및 개발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중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B규약의 경우에 제26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이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기타 지위와 같은 어떤 이유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유효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불공정한 차별이 없는 평등대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인권규약과 장애인 인권과의 연관성으로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3] 국제인권규약과 장애인 인권과의 연관성

분 야	국제인권규약	장애인인권	장애인의 세부권리
경 제 적 사 회 적 및 문 화 적 권 리	•노동권(6,7조)	1.장애인의 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기회</li> <li>•노동환경</li> <li>•노동과정</li> <li>•적절한 보수보장</li> </ul>
	•산모의 특별보호(10조)	2.여성장애인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전, 산후 특별보호</li> <li>•임신 중 보호</li> </ul>
	•생계유지 권리(11조)	3.장애인의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유지</li> </ul>
	•건강을 누릴 권리(12조)	4.장애인의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계획에 참여하고 알 권리</li> <li>•재활서비스제공</li> <li>•건강한 생활환경</li> <li>•장애예방</li> <li>•불결한 시설개선</li> </ul>
	•교육받을 권리(13조)	5.장애인의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교육</li> <li>•교육환경(편의시설등)</li> <li>•필요시특수교육제공</li> </ul>
	•문화참여 권리(15조)	6.장애인 문화향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공간편의시설</li> <li>•참여능력편견해소</li> </ul>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인종 등 어떤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1조)	7.장애이유로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li> </ul>
	•인권 침해 예방 구제책(2조)	8.장애인인권침해대응특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지원</li> <li>•도우미 등</li> </ul>
	•형사상의 권리(9조)	9.형사상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방적이고 불필요한 체포방지</li> <li>•체포시 그 사유를 알 권리</li> <li>•의사소통의 문제로 재판과정의 불이익 방지</li> </ul>
	•사생활의 권리(17조)	10.시설장애인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장애인의 사생활권</li> </ul>
	•결혼과	11.가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생활권</li> </ul>

	가정형성권리(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할 권리</li> <li>●강제불입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정권(25조)</li> </ul>	12.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투표권</li> <li>●투표소 접근권</li> <li>●대민봉사기회</li> </ul>

※UN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장애인 인권 문제조사보고서 「Human Rights and Disability;1991」 (이익섭 역, 1992) 내용을 UN의 사회권, 자유권 규약과 장애인인권과의 1상관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킨 유형임.

### ③장애인 복지법에서 차별금지

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하여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④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편의증진에 관한 차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되어 있다. 본 법률 제7조와 제8조는 다음과 같다.

<p>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공원</li> <li>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li> <li>4. 공동주택</li> <li>6. 통신시설</li> <li>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li> </ol> <p>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p>
---

있다. <개정 1999.1.21>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7.2.1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2010년 장애인거주시설 안내에 제시된 장애인 인권의 내용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장애인 거주시설 안내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체결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장애인거주시설<sup>3)</sup>(이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지자체와 시설운영자, 직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① 장애인 인권의 기본 권리의 범위

이 기준의 기본 이념은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지적장애인권리선언, 농아인권리선언,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문서, 국내의 「대한민국헌법」<sup>4)</sup>과 장애인 인권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법」<sup>5)</sup>, 「장애인복지법」<sup>6)</sup>,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sup>7)</sup>,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권리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

이 기준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평등권 :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비장애인이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② 생존권 :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 의식주 보장, 의료 및 건강보장의 권리, 물리적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보장의 권리 등이 포함

③ 자유권 :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권리, 입·퇴소의 자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3)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7조 사생활보호, 제18 통신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4조 선거권, 제26조 청원권 등의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은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정함으로써 적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의 책임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6) 「장애인복지법」은 제4조 제1항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장애인에게 역시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이 포함

④ 사회권 : 완전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가족을 이룰 권리,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⑤ 정치권 :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 및 그 과정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과 접근성 보장, 공직참여와 공무수행 참여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⑥ 문화권 :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문화 활동에서의 권리. 문화적 매체 이용 및 문화시설과 서비스 이용에의 접근성 보장 등이 포함

⑦ 법절차적 권리 : 권리구제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절차와 재판 등에서 충분한 법률상의 정보제공 및 물리적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동등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으며,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계획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

이와 같은 기본적 권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래에 기술된 장애인의 권리를 손상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

첫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시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됨.

-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 정기적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
- 화재나 재해·재정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 등 외부방문자와 자유롭게 만날 권리
- 자신의 입·퇴소에 대해 결정과 결정결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 임신·출산·양육·가사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강요·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
  -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 노동에 따른 수입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권리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시설생활 및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아동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훈련서비스,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권리
  - 정신장애인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 둘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생활과 의식주를 보장한다.
  - 장애인의 의료 및 건강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종교생활 자유를 보장한다.
  -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장애인의 소통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다.
  - 장애인의 자유로운 입·퇴소를 보장한다.
  - 장애인의 건전한 성(性)생활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가족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경제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장애인이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5)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성경은 신 구약 전체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진다. 이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다른 관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약은 차별하고 신약은 존중한다는 이분적인 관점을 배격한다. 신구약 전체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장애인과 차별받는 장애인이 등장한다. 이러한 면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신구약 전체에서 장애인의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신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사회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전자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이며, 후자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 (1)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존중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장애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인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핵심일꾼으로 삼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게 하셨다. 아브라함가(家)에 등장하는 사라의 불임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시각장애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시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므로 야곱이 변화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레아와 결혼하여 왕족의 유다와 제사장 직분의 레위를 생산케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장애인과 동일시하였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한 심판의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장애인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결정적인 기준이 됨을 역설하셨다. 죽어가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진리를 증명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장애인 사역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부자가 베포 잔치집 비유에서 천국에 우선 들어갈 존재는 장애인임을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나아가 천국에서 시슴처럼 될 존재인 장애인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가 장애인과 아무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 사역과 사도들이 초대 목회 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한 사건은 교회확장과 하나님 나라 선교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됨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과 장애인 사역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다.

## (2)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증명해준 책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1990년대부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에 관한 구절은 결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보면 성결법전에 있어서 신체에 결함이 있는 짐승은 결코 제물이 될 수 없거나 제사장도 될 수 없다는 구절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언어 속에서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개념규정이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귀신과 결부시킨 것은 당시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성경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절들이 꽤 있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구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눅13:10-18에 나타난 귀신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은 회당 안에서 존재감조차 인정받지 못한 차별을 경험하며, 요5:2-18절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된 장애인은 중증의 장애 때문에 긴세월동안 소외된 존재로서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행3:1-26의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은 성전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으로만 비춰질 뿐이었으며, 눅19:1-10의 지체장애인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차별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청각장애인들은 대개의 경우 귀신들린 것으로 묘사되며, 이러한 현상은 중세의 교부 어거스틴을 거쳐 종교개혁가 마틴루터에 이르기 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는 불신앙 혹은 우매한 신앙을 설명할 때 절름발이,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비유로 삼아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6) 한국 교회에서의 장애인 인권과 차별

### (1) 직분과 교회회원 가입에 있어서 장애인 인권과 차별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장애인에게 목사안수를 주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20여년 전 만해도 일부 교단에서는 공적으로 장애인에게 목사안수를 주는 일을 거부한 적도 있었다. 그 근거는 구약의 성결법전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이 이루어진 일은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지적/발달 장애인 혹은 중증 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세례 지침을 총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교단에서든 지교회 차원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아니면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다. 이 또한 장애인 차별이 아닐 수 없다.

### (2) 교회사역에 있어서 장애인 인권과 차별

성경에는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일꾼이며, 선교의 주체이다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을 구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총회/노회/교회에서 장애인을 향한 예산지원이 선교비가 아니라 봉사 혹은 구제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 특히 교회학교에서 장애인은 분리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이지, 함께 예배드려야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성경에서 존중하는 장애인 인권이 교회 사역에서는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일부 교회에서 통합예배를 드리는 운동/다함께 예배 드리기를 전개하는 것은 뒤늦음 감은 잊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마땅한 일임에 틀림이없다.

### (3)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 장애인 인권과 차별

교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을 사용하여 왔다. “소경, 앓은뱅이, 병어리, 문둥병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되 거리낌이 없었다. 특히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설교가 이루어지는 강단에서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개정개역판을 통하여 성경이 용어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성경에 주석을 달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용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교인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용어를 일상용어화 시키는 우를 범한 것을 물론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효과도 조장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인권 차별은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4) 교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장애인 인권과 차별

수많은 장애인들은 교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한다. 교육/ 성가/ 봉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역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안수를 받는 장애인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의 위치보다는 비전임 사역자(Part time ministry)의 위치에 있는 일이 현실이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장애인은 “함께 하기에 어려운 존재”라는 의식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에 불편함을 겪게 하고 있다. 혹은 장애인을 “믿음이 없어서 치유를 받지 못하는 존재” 혹은 “죄의 결과로서의 장애인” 때로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서 신유사역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 (5) 예배당에로의 접근권에 있어서 장애인 인권과 차별

수많은 교회들은 ‘너희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장애인을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장애인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사역은 특수사역 중 하나가 되어 특별한 교회만이 장애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가 있기에 대부분의 교회는 지체/시각/청각/뇌병변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예배당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障碍物)을 경험한다. 계단, 점자보도 블록이 없거나 수화통역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나아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물론 예배당 내부가 대부분 장의자(長椅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태부족이다. 혹 어떤 교회는 공간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장애인이 일반성도(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배려(?)로 인하여 분리된 상태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곳이 많다. 이는 장애인 차별의 현장이다.

#### (6) 교회 내의 장애인 성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전세계에서 급성장한 모델이 되고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가 2,429,547명에 해당된다. 이 중에 교회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 중요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 각교단마다 9월에 총회를 개최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전도하는 열심을 보여지지 않고 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의 말씀을 강조하여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지만, 이 말씀보다 앞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눅14:21)’는 말씀은 경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조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교회가 장애인이 없는 교회

(church without the disabled)임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장애인 없는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나아가 한국 교회는 총회에서 정한 장애인 주일조차 존재를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지키지도 않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가까이에 정했던 장애인 주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6월로 옮기므로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조차 상실하게 하는 후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서의 장애인의 위치이다.

### (7) 교단 내에 “장애인 목회, 장애인 선교”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이 있다. 각 부서에서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장애인 직업과 고용,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교단 어디에도 장애인 교육/선교/목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장애인 관련 업무가 선교가 아니라 구제, 전도 파트에 있다 하여도 구제성격이 강한 업무에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교회 내에 장애인 선교/목회 부분의 담당부서의 부재는 장애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천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회와 지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7)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2008년 12월 8일 전북 김제영광의 집과 완주 예수 재활원에서 지적장애인의 차별 문제가 MBC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었다. 이 기관은 목회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의 성폭행, 감금, 횡령 등의 사회복지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2008년 12월 12일 ablenews 기사, 함께 걸음 2008년 12월 19일 기사). 이로 인하여 김제영광의 집 대표는 구속되었다. 2010년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파주 법원읍에 소재한 기도원에서 장애인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보도(2010년 8월 9일 연합뉴스 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도원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교회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나 감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또한 한국 교회가 장애인 인권이 차별받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3. 마감하는 말

장애인 인권과 차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법과 선언문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을 제시하고, 성경과 교회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점과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인권 문제는 이미 사회에서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법적 근거조항을 확실하게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201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장애인 거주시설 안내서에서는 시설 내의 장애인 인권 부분에 대하여 다루면서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장애인의 인권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장애인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도처에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장애인은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한 존재일 뿐 아니라 사회보다 더욱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과 선교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비중이 매우 낮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보다 더욱 장애인을 존중해야 할 교회에서조차 장애인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하며 나아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적시하고, 장애인 선교 현장(교회와 선교기관 등)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면 차별받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 존중 받아야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Ⅰ 참고문헌 Ⅰ

강승엽(2007).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05).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05)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성(2005).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만두(199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정제발전과 아동복지”.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p.29.

김미옥(2007).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 인권기반접근을 중심으로 -.2007 장애인복지시설장대회 자료집.

김수정(1999). 아동복지시설의 사회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희(2002). 시설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와 직무만족도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용득(2005). 한국장애인복지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영수(2006).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중섭(2001).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통일평화인권총서.

김진우(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장애인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정책의 변화 방향. 2007 장애인복지시설장대회 자료집.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2007 장애인복지시설장대회 자료집.

노광호(2005).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자와 마사코 저. 장영인 역(1995).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박옥순(2002). 장애인 인권지표개발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봉제(2003). 장애인 복지시설의개방적 운영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운(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와 장애인정책의 방향 세미나 자료집.

박태영(1995).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 보건복지부(2010). 장애인 거주시설 안내.
- 신호선(2003). 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건(2002). 한국인권보장의 현황과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ISSN 권4호 출판일 2002.(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연구센터).
- 양영신(2003).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 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인숙(2006). 인권개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권의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찬영(2000).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이론과 실천. 전주대학교 출판부.
- 에이블뉴스. 2008년.
- 연합뉴스. 2010년.
- 이문희(2007).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보라(2001).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200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5). “장애인권교육 길라잡이”.
- 정무성외(2005). 현대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 조형석(2006).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정책의 방향 세미나 자료집
- 짐아이프(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 <부록>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 부록 1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부록 2 : 장애인 인권헌장

###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화 통역 . 자막 . 점자 .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 예술 .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 분리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자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부록 3 : 장애인 권리 선언

# 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12월 9일 채택된 UN뉴욕 총회 결의문 3447(30차)

총회(The General Assembly) 는 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것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통된 기초와 준거틀로 사용되도록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장애인(disabled person)'이라 함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 난다.

4.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을 가진다.

5. 장애인들은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을 활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6. 장애인들은 필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들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장애인들은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를 가진다.

9. 장애인들은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10. 장애인들은 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들은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장애인들과 그들이 가족들 및 지역 사회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 부록 4 : 농아인 권리선언

# 농아인 권리선언

서 언

1. UN 사람들은 국제인권선언에 비추어 자유와 정의, 평화의 참다운 기초로서의 인권은 전세계를 통하여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원리라고 선언하였다.

2. UN 사람들은 이 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각 개인에게 의료보호와 무상교육, 자유로운 직업선택,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 존엄,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하였다.

3.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UN선언에 제시된 원리와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문서, 특수교육과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과 관련된 UNESCO 문서등을 주목하며,

4. 보편적으로 인식된 인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5. 특발성 농(ideopathic deaf)은 신체적 특성의 손상없이 감각적 장애만 나타나는 상태인데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재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교육기회의 결핍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농아인은 신체적 장애를 느끼고 인권선언과 아무관계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며 식물인간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 문서에 포함된 주요 선언들이 생명을 얻고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아인의 기본인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UN 및 그 전문기관, 비정부 국제조직, 농아인의 재활과 사회 재통합을 위해 일하는 기관 및 연합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며, 세계농아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제8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농아인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의 권리선언,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UNESCO,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승인된 문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조

청각장애 문제가 현대적 접근법으로 다루어져 농아인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견의 결과로 인한 낡은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 제3조

농아인이 실제로 평등한 조건 아래서 다른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기 선언에 제시된 법률과 기타 조치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완전한 재활과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

(a)농아 청소년은 특별한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다 전문적(poly-specialistic) 조기진단, 특수학급, 무료 보청기 지급, 직업 및 교육과정의 자유로운 선택, 특수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b)농아 아동대상 교육의 질과 우선 순위는 일반 공교육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c)지문자, 수화, 발화 및 독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 방법과 체계가 자유롭게 검증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농아인의 복지에 헌신적인 부모와 연합회는 교육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a)전체 지역사회는 농아연합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농아인의 바램과 목적을 실현하고 그들이 권리와 의무면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이와 함께 그들은 각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맞는 특수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제6조

농아인은 청각이 꼭 필요하지 않는 1260종의 직업 중에서 선정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 만족의 토대가 된다.

#### 제7조

특히 농아인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청기 착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적절한 그림 및 시각보조기구의 사용, 영화나 TV프로그램에 자막삽입, 수화에 대한 넓은 교육적 낙인을 제거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등도 포함된다.

#### 제8조

(a) 청각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재활사업에 의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전국적 농아인 조직을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도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농아인의 모든 경험이 가족과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 평생교육, 여가시간 활용 등의 문제로 집약된다.

(b) 다른 도구나 수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법적 명칭이 농아인 협회에 부여되어 농아인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도덕적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

(a) 지역사회는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역서비스와 시각보조기구와 제도, 보청기의 사용과 응용, 평생교육, 문화 그리고 직업교육, 치료, 진단을 위한 전문요원, 과학적인 전문요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특별한 학교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b)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와 국가적인 기구는 과학적인 기술혁신과 정부, 기술의 상호 교육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한다.

(c) 세계농아연맹이 국가적인 연합회와 연합하는 목적은 농아인을 위한 보호와 농아인 재활분야에서 세계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아인복지의 개발이 약속되고 협력이 제공되고 연구에 관계된 자문을 하고 연구와 프로그램 교류를 하는 것이다. 세계농아인연맹은 앞으로 농아인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을 설립하는데 솔선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한다.

\* 이 문서에서 농(deaf)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이든 청각손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세계농아연맹(WFD) 총회

1972년 8월 채택

## 부록 5 :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 1971.12.20 UN총회 -

제1조 정신지체인은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정신지체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훈련·재활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신지체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 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정신지체인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가하여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정신지체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자격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6조 정신지체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해야 한다.

제7조 정신지체인은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 부록 6 : UN 장애인 권리협약 (번역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서 비롯된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3조(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 제4조(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절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6조(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7조(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 제8조(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 제10조(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

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 제14조(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제20조(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 제22조(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제24조(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 제25조(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 제26조(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재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재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 제27조(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조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 제32조(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 제34조(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35조(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 제36조(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37조(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3조(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정보)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보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금년 만료되는 개인운영신고시설(미신고시설)의 문제

나사렛대학교 이 계 윤 교수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은 1970년대 이후 꾸준하게 성장 발전해 왔다.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원이 문을 닫게 되었을 즈음 장애인 관련 용어나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을 전환하게 된 것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8년 올림픽에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한 정비와 관리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은 또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기존의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설은 1995년 293개소에서 2004년 1,096개소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인운영 장애인 시설은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에 의하면 약 290개<sup>8)</sup>가 된다.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sup>9)</sup>의 입소 기준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8) 나유정(2008). "개인운영시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NASW(1987)은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일정한 범위 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사무직원 기타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시설로 규정, 이영희(1996:59)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공적인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일부분으로, 심신의 미발달이나 미성숙 장애 혹은 노화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자립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생활·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가족 부양 기능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설비 및 직원 운영 조직, 이영선(1996)은 사회복지시설이 시설 생활자의 삶과 사회적 자립 능력을 강화시키는 공공의 장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의 제공 장소, 김미숙(2001)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사회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 하였다.

하는 엄격함으로 인해, 입소를 희망하는 요보호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국가가 미치지 못했고, 지역적으로 시설 또한 편중되어 있다. 일반 계층 대상자들의 사회복지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 대상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와 일치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충분하지 못했고 또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인운영시설이 담당했다. 나아가 국민의 개별적 복지 문제를 민간 스스로 참여함으로 국가의 복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sup>10)</sup>.

장애인시설(생활시설, 그룹 홈<sup>11)</sup>, 단기보호시설)의 공급·수요와 비교하여 수요측면에서 어떤 수준인지를 조사한 결과, 부족한 편이다 57.4%, 매우 부족하다 29.5%, 많은 편이다 11.5%, 매우 많다 1.6%로 조사결과 나왔고, 전체 응답자 305명 중 265명인 86.9%가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인원 수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와 같은 조사에 근거하면 기존의 대규모화된 시설에 대하여 개인운영시설이 소규모시설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용찬(2004)<sup>13)</sup>은 미신고시설이 공식적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해왔다고 평하였다. 즉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은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하고 미신고 시설 중 일부는 무허가건물이며 비닐하우스, 가건물 상태로 있는 시설도 있어서 조속한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하여 2002년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세워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및 전원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조건부 시설들은 개인신고시설로 전환하였다. 이를 개인운영시설로 지칭하여 ‘법인시설’과 구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된 시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대한 정부

10) 김미숙 외(2001).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88~89.

11)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와 규모를 갖추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신정, p. 146.

12) 장기성(2007).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공청회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현재와 진단. 보건복지부.

13) 변용찬(2004). “조건부 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 자료집」. pp.3-22.

정책은 2010년 12월 31일 신고기한을 정하여 폐쇄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금년 말로 만료되는 개인운영시설의 신고기한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조망해보고자 한다.

## 2. 전개하는 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현장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의 가운데 놓여져 있다.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관, 재가장애인봉사센터, 그룹홈, 주간기 보호센터 등의 급증을 통하여 탈시설화와 정상화<sup>14)</sup>로 정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 장애인 입산부 노인을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복지는 법적 근거 위에서 실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법률 제정 등에는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 큰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자립생활 운동과 장애인 인권 운동,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sup>15)</sup>에의 참여 등으로 장애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뿐 아니라 이러한 법률제정이라는 결실까지 맺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추세에 따라 정부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책기조도 변화하였다. 그것은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sup>16)</sup>로의 정책변화이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까지는 4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 신축을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시설의 신축 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며, 오는 2013년까지 기존의 대규모시설을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14)</sup>.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소규모화는 거주 중심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sup>15)</sup>의 반영과 정상화(Normalization)<sup>15)</sup>로의 지향을 위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설의 소규모는 시설 수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탈피, 소규모화, 지역사회중심 등을 그 기본 요소로

14) 맹혜령기자. 에이블 뉴스 :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추진, 2008. 4. 11.

15) 뱅크(Bank-Mikkelsen)는 인간의 존엄성, 권리,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과 같은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높은 인간의 가치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가능한 한 일상에 가까운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니르예(nirje)는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나 생활 형태와 가능하면 가까운 일상생활 환경이나 생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울펜스버거(wolfensberger, 1972)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 정립, 유지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

하며, 관리적이고 격리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속성을 배제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시설 입소자에게도 유지시켜 주려는 시설 변혁 운동인 것이다. 사회복지 추세가 탈 시설화의 방향으로,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 전환되는 시점에 소규모 개인운영시설은 사회복지 발전에 한 단계 앞선 바람직한 방향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소규모로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설 생활인의 입장에서 개별적 지원에 적용시키는데 유리하고, 둘째, 소규모의 집단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셋째, 대규모시설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넷째, 지역사회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시설과 시설생활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sup>17)</sup>.

## 1) 개인운영시설(소규모시설)의 필요성 및 배경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추진 결과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내용을 정하고 개인운영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항<sup>18)</sup> 규정에 의거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개인운영시설이라고 말한다<sup>19)</sup>.

### ①소규모 시설의 필요성

시설 중심의 보호 사업에서 1970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각 분야에 걸친 공통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sup>20)</sup>.

16) 이용건(2006). “미신고 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심재호. 서울연구포커스 : 서울시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운영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36호, 2005. 7.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을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9) 보건복지부(20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 570.

20) 이태영외(2002). 『사회복지법제론』,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회복지 관련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의 기본이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들이 각기 따로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

국가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시설을 공급하지 못하고, 더구나 시설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허용 기준이 현실보다 높고, 국가 정책 규모도 경제에 의한 양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는 유물로 취급되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대규모를 유도하는 입소인원비례 예산지원방식과 집단수용 주거환경을 초래하는 시설설비기준이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생활인 정원 규모는 20~300명 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1개소 평균 74명의 생활인이 거주하고 있고, 100명 이상의 생활인이 거주하는 대규모시설이 2006년 말 기준으로 86개소인 29.9%로 조사되었다<sup>21)</sup>.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주거 공간과 주간 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단순 보호 기능으로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세계적 추세인 소규모화와 거주 중심의 기능 확립 등 장애인의 선택권보장이라는 정상화(Normalization)로의 지향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규모화가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소규모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시설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정책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 환경 보장, 둘째일반인 삶의 양식과 유사한 낮 시간의 활동 장소와 밤 시간의 거주 장소 분리, 셋째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원화, 넷째 자립 지원 정책의 우선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로 전환<sup>22)</sup>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주민과 동등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정상화 원리이다. 그러나 시설은 이러한 정상화 원리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집단의 규모로 시설에서 생활하면 개인의 욕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없고 집단의 질서에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결정권, 자시의 의사표현 등에 있어서 무능력해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위축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것이 시설병(hospitalism)이라고 한다.

---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동인, p. 125.

21) 보건복지가족부(공청회)(2007),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추진.

22) 김동호(2008),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워크숍 : 장애인거주시설 혁신의 방향. 일본도 2006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자립지원시스템·서비스 체계로 전면 재편 추진 중에 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의 대규모화가 되었고, 비리와 시설 문제가 사회적으로 폭로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격리나 감금 이상의 아무런 사회적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시설의 현실<sup>23)</sup>이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사회 소규모시설은 장애인이 사는 사회사의 평범한 거주형태이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에서 최근 혁신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통해 장애인이 일탈자라는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둘째, 정상화된 맥락에서 욕구 충족으로 소규모시설은 생활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 다른 구성원들이 거주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유사한 생활 유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인의 권리와 일치이다. 장애나 사회적 능력과 관계없이 장애인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속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에게 있어 지역사회 속에서 살 권리는 그들의 욕구와 일치한다.

넷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 소규모시설이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것은 상호 의존과 의무를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집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시설은 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집처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과 관련된 사회적, 심리적 장점과 안전, 사생활, 친근감,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일상생활은 무엇보다 강한 소속감과 애착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사회적·복지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 실천의 장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과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절대 빈곤의 무의무탁한 요보호자로부터 시작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를 가진 모든 국민, 무연고자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23) 국가인권위원회(2005). 시설생활인 입소의 장기화는 시설생활인을 시설병 증후군에 빠지게 한다. 즉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의식주와 일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장기간 살게 되면서, 보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p. 292.

위한 것이 사회복지 기본이념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유리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한 단계 발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 ②. 개인운영시설이 출현하게 된 배경

대부분의 사회복지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지는 생활시설의 출현으로 시작했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의 출현을 통하여 고아원이 시작했고, 1970년대 고아원은 장애인 생활시설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출현과 변화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과 봉사를 선호했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형편이 국민전체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힘썼을 뿐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지는 민간·종교단체에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민간의 희생과 봉사자 주축이 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작을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선적인 동기에 의하여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은 자연스럽게 개인 시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일부는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겼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기에 많은 시설은 개인의 종교적인 동기 혹은 자선적인 동기에 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을 보호하는 일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은 후원금이 주된 원천이 되었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나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설치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시설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미신고시설<sup>24)</sup>이 발생, 난립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24) 미신고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②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일선 시·군·구청에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여, 법·제도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의 개인이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sup>25)</sup>,

첫째, 1980년대부터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이 대규모화 되었고, 국가가 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시설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의 정책도 규모의 경제에 의한 양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대형화를 추구했으며, 재정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수용 인원에 대한 일정 비율에 따라 지원함에 시설의 대형화가 추구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은 시설 기준에 미달하여 제도권 안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요보호자의 수요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지연되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양산되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 신고시설은 국고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때문에 미신고 시설은 입소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나 연고자의 소개만으로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즉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이 처음부터 복지시설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자선과 봉사의 이념으로 시작됨으로 경제적 한계에 따른 시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계속 운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미신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고, 시설 환경이 미흡, 신고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미신고시설에 대해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sup>26)</sup>을 발표하여, 그동안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복지기능을 수행 해온 1,000여개의 시설로 하여금 시설 설치를 완화하여 신고를 통한 개인운영시설로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 2) 보건복지부의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에 대한 지침 내용<sup>27)</sup>

### (1)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및 미신고시설 정비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 함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완화된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 (한시규정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25) 김복일(2000).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pp. 17~19.

26) 보건복지부(2005).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

27) 보건복지부(2010). 장애인 거주시설안내.

이외의 자가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충족하여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구분한다. 미신고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2)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추진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2006년도까지 신고한 시설 및 2007년도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수리한 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화된 기준적용 유예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유예기간(2009년 12월 31일)내에 법정시설 미전환시설은 미신고시설로 구분한다. 법정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해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토록 독려 및 지원한다. 2009년 제출한 시설별 법정시설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2010년말 까지 법정시설 전환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실시하되, 시설폐쇄시 입소장애인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한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시 시설설치 신고서 접수 수리 함에 있어서 시설이용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전환시설의 종류와 유형 구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침 참조)하고, 시설별로 이용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실비 생활시설로 운영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환시설 종류 결정한다.

법정시설로 전환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역내 시설서비스 수요·공급 정책에 따라 시설서비스 공급을 담당할 경우 운영비는 지원되어야 한다.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은 이미 발생된 시설서비스 수요자로 인식 필요하며, 시군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개인운영신고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생활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을 심사(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하여야 하고, 시군구 주무관청은 시설서비스 수요가 있을 경우 그 서비스 공급(시설확충)계획에 시군구립시설, 법인운영시설 또는 개인운영시설로 할 것인지를 선택 결정하고, 확충된 시설에 시설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서를 송부(보호조치 결정 및 서비스 위탁)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10인 이하 시설에 대한 직원 배치기준 적용은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지침) 중증장애인 지원기준에 따라 생활지도원(직접서비스 담당)수를 산정하여

그 인원 범위내에서 직접서비스 담당 직원이 시설장 등 타 직종을 겸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이용장애인 10인 시설 예시 :  $10인 \div 4.7명 \times 2인 = 4인$ 으로 한다.

### (3)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미신고시설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즉시 시설 폐쇄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지자체 책임주의에 의해 제공되며 특히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이용(입소)은 조치제도로 규정(보호조치 결정, 입소의뢰서 송부)하였고, 그 법률적 근거(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진행한다.

-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② 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시설보호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게 함)
- ③ 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이용(입소)희망 장애인을 모집(유인)하거나 자체적인 입소결정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근절되어야 하며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금전)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한다. 시설조사는 반드시 장애인인권보호관련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등 진술 확인시 전문상담을 위해 생활장애인을 타 시설 등에 분리 조치(긴급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인력 동원 협조하에 실시한다.

시설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하고, 시설이용 장애인 전원조치한다. 시설이용(생활)장애인은 이미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므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귀가 등 처리하며, 전원조치(긴급보호)에 필요한 시군구내의 시설 자릿수가 부족할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간 전원조치 (대상 시군구 및 시도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하여야 한다.

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시 최단 시일 내에 법정 신고시설 등 추진(일정수립 후 복지부에 보고)하고, 지자체별 미신고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매월 20일까지 보고)하며,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설신축비 예산계상 추가 신청한다.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사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

미신고시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 지적하여 미신고 장애인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 촉구한 바 있다. 2009년 10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열린재활원에 대해 이정선 의원실, 보건복지가족부, 평택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불시 합동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 시설이용(생활) 장애인간 성폭력 및 성추행 진술 확인
- 10.22. 시설이용(생활)장애인 전원(42인) 남녀별로 경기도내 3개시설로 분리 조치(긴급보호)
- (평택시) 미신고시설 열린재활원 운영자 수사의뢰 (시설 자진폐쇄)
- 장애인단체에서 평택시장 고발(형법제122조에의한 직무유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순찰 활동 강화한다.

#### (4) 법정시설 전환 개인운영시설 입·퇴소관리

입소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고, 입·퇴소 절차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과 같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내지 제33조의4(보호의결정)의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절차를 준수하고, 시군구 주무관청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를 받은 장애인만 입소 가능하며 사례관리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 체결하고,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을 개별시설에서 모집 행위 근절한다. 시설 이용장애인(생활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소가 가능하다.

#### (5)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 장애인 추가 입소 중지

시군구 주무관청이 지역내 시설서비스 수급계획에 따라 법정시설로 양성화하고 지원할 예정인 시설은 입소를 허용하되 2010년 내에 법정기준 충족 하도록 한다.

### 3) 개인운영시설의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08)에 의하면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 발표 이후 미신고시설에

서 시설설비 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통한 신고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운영시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운영시설을 파악한 결과 2004년 37개소에서 2005년 107개소, 2006년 603개소에서 9,651명의 생활인이 생활하고 있었고 2008년 4월 현재 1,313개소에서 20,809명의 생활인이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가는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대책<sup>28)</sup>을 마련하여 미신고시설에 대해 소규모 시설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2003년시설 기준 완화 조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인운영시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에 493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5%로 조사되었고, 서울 120개소 9.1%, 충청북도 97개소 7.3%, 전라북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류별로는 노인관련시설이 782개소로 전체의 59.5%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시설이 306개소 23.3%, 아동시설이 175개소 13.3%, 정신장애시설, 부랑인시설로 조사되었다.

※ 시설종류별 평균 생활인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총 계	노 인	부랑인	아 동	장애인	정 신
시 설 수	1,313개소	782	24	175	306	26
생활자 수	20,809명	13,917	428	1,539	4,731	194
평균 인원수	15.8명	17.7	17.8	8.7	15.4	7.4

#### 4) 2010년 만료되는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의 향후 방안

##### (1)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미신고 시설 중 2009년 시설폐쇄 등 정비대상 시설이 31개이며, 이 중 2009년에 정비완료 시설은 7개이며, 정비대상 24개 중 법정전환은 13개, 자진폐쇄는 5개, 강제폐쇄 대상은 6개로 나와 있다.

※ '09년도에 조사된 장애인 미신고시설 시설폐쇄 등 정비추진 현황

대상시설 ( '09.9.)	정비완료 ( '09.12.)	정비대상	10년중 조치계획		
			법정전환	자진폐쇄	강제폐쇄
31	7	24	13	5	6

28) 보건복지부(2002). 미신고시설종합대책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05). 미신고시설종합관리대책 관련안내.

\* 강제폐쇄 대상시설은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등 불법사항은 고발 등 조치

또한 개인운영 시설 중 법정 시설 전환 대상 시설은 2009년 현재 232개이며, 2009년에 전환완료(폐쇄포함) 시설은 102개, 미전환 시설은 130개이다. 이 중 2010년 말까지 전환가능한 시설은 80개이며,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은 50개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 2009년도에 조사된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추진 현황

대상시설 (’09.9.)	’09년도 전환완료 (폐쇄포함)	미전환시설	’10년도 전환추진	
			’10년말까지 전환가능	전환불가
232	102	130	80	50

\*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케하여 전환토록 추진하되 전환불가 시설은 연내 폐쇄 조치

**(2) 전환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이 존속하는 이유**

정부의 전환 기준과 시효 만료가 제시되어도 미신고시설이 존속하는 이유는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받게 되어있는데 미신고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서 열악한 시설환경, 영세한 자본, 전문인력 등의 부재로 평가에 불리할 수 밖에 없어서 신고를 꺼리거나<sup>29)</sup> 시설생활자들이 신고사회복지시설에로의 입소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이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신고 시설이 존속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시설 설치율 형평성이 없고, 군지역에서는 신고시설이 없어 미신고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미신고 시설은 다음의 여러 가지 측면의 한계<sup>30)</sup>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미신고시설은 재정의 영세성 및 재정조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의 영세성은 재정조달이 어렵다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으로 직접 연계되어 악순환을 겪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9)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 김미숙, 변용찬, 최재성, 김은정(2005).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실태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둘째 시설설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신고 시설은 시설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의 안전성과 시설설비의 미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주거시설 및 건축물이 가정집이나 교회 시설물, 불법건축물, 버려진 축사, 비닐하우스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을 겪는다. 재정의 한계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며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종사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적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비전문인에 의해 보호받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무급종사자가 많고 임금을 받고 있는 종사자라 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운영의 불투명성 및 인권 문제의 시각지대 놓여져 있다. 미신고시설의 생활자의 권익이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설이 개방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에 후원금, 생활자들이 지급받는 생계 급여 등의 사용에 대해 시설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3)미신고 시설의 향후 대책방안

앞에서 제시한 개인운영 시설과 미신고시설의 현황을 통해서 2010년 12월 31일 만료가 되는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중장기 대책을 통해서 별도의 지원이 없이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의 문제는 이같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개인의 박애주의 정신과 종교적인 신념에 의하여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고 정부의 정책의 보완적인 기능을 감당했던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재가(sanction)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이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 혹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신고시설의 존재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하나인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정상화(Normalization), 그리고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의 맥락과도 연관시켜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폐쇄조치라는 극단의 조치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신고시설의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거주시설에로의 방향전환과 맞물려서 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탈시설화,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시설로 위탁되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생활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가 미신고시설의 향후 방향에 열쇠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방향은 거주환경의 적합성과 적절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설이 아닌 주거형태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아파트의 1층에 해당되는 주거공간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sup>31)</sup>. 싱가포르에서는 아파트 1층에 특수학교 등을 설치하여 좁은 국토의 유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낙인도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피하는 것이 1층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1층은 접근권과 편리성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현실에 있어서 정부주도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제공하면 가정 형태의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탈시설화, 정상화와 아울러 자립생활운동에도 일치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신고시설의 재정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주된 원인이 재정적인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감독의 부재로 인한 투명성의 결여, 또한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화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룹홈 제도와 마찬가지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10명 이내로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미신고시설이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맞는 종사자의 채용과 이들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정하균 의원<sup>32)</sup>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장애인시설의

31) 에이블뉴스(2010). 이계운의 재활복지선교블로그.

32) 에이블뉴스(2010). '시설거주기능재정립, 시설정원 소규모화'. 7월 10일자.

거주기능의 재정립을 촉구하고 시설정원을 최대 30명으로 하는 소규모화의 내용을 담았다.

미신고시설의 폐쇄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통한 방향전환 모색을 하며, 나아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때 미신고 시설의 방향모색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3. 마감하는 말

1988년 장애인 올림픽 이후로 장애인분야의 변화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변화와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 중심에는 장애인 당사자 주의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기 목소리 내는 운동이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련된 법 제정 등은 대단히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 과거에는 개인의 종교심에 의탁하여 방치했던 소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바람직한 방향에서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민간단체의 고민은 모두 긍정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고민이 정부 관계자와 운영자들 사이의 줄다리기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거시적으로 변화되는 거대한 운동의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개인운영시설과 미신고시설의 향후 방향도 이와 발걸음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방향의 전환과 모색은 그동안의 공과를 인정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시효가 만료되는 미신고시설의 문제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인권의 문제요, 아울러 이들과 더불어 살아왔던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삶도 함께 고려하되, 장애인 인권의 보장이 우선시 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폐쇄조치를 통한 개인의 노력에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구책을 마련하기 힘든 시설은 소규모 주거시설로의 전환과 아울러 그 실질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을 돌보아왔던 운영자들의 진취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전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동기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나아가 이러한 시설을 운영했던 운영자들의 대책도 긍정적으로 마련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Ⅰ 참고문헌 Ⅰ

### 1) 단행본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교남소망의 집(2005).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사례관리 실제』.

김동호(2008).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워크숍 : 장애인거주시설 혁신의 방향.

김미숙, 변용찬, 최재성, 김은정(2005).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실태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정인욱복지재단(2003). 『정신지체인 그룹 홈 매뉴얼』. 나눔의 집.

보건복지부(2002). 미신고시설종합대책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05). 미신고시설종합관리대책 관련안내.

보건복지부(2005).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 사업 안내자료.

보건복지가족부(공청회)(2007).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2008).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05

보건복지부(2008). 『20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8). 『200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2010). 『2010 장애인복지 거주시설 안내』.

### 2) 학위논문

곽강욱(2006).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직무부담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숙(2004).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안”. 대구효성기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수(2007).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나유정(2008). “개인운영시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이용권(2007). “미신고 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광직(2007). “미신고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장정숙(2007). “사회복지개인운영시설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용만(2006). “미신고 복지시설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정기간행물 및 기타

국가인권위원회(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강민규(2007).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사회복지시설예산의 확충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미숙 외(2001).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88~89.

김용득(2007).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당성과 고려 요소들.

박은미(2001). 한국사회복지시설연구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제4집, 한국사회복지시설연구회.

변용찬(2004). “조건부 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 자료집』 .pp.3-22.

성공회대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2007

심재호, 서울연구포커스 : 서울시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운영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36호, 2005. 7.

유시영(2006). 서울시장애인 그룹 홈 활성화 방안 모색.

장기성(2007).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공청회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현재와 진단. 보건복지부.

한국소규모장애인시설협회, 겨자씨 창간호, 2007

한국소규모장애인시설협회, <http://cafe.daum.net/privategh>

## 장애인 복지 선교 현장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 말 숙

개신교 장애인 복지 사역은 1885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장애인 복지 선교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교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대한 좋은 전통을 세워주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특수교육과 복지사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개신 교회는 개 교회 성장 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하게 되었고 초기 선교사들이 감당했던 복지사역은 점차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 이후 한국 교회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 지도자와 개교회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2000년 이후 가톨릭 및 불교의 성장에 반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유엔(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이 이전과 달리 새롭게 변화되고 개선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에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복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개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장애인 복지는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복지적 욕구도 높아지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장애인 이용 시설들이 점차 활성화되고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들과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복지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미흡하지만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나름대로 사회 복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회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복지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참여가 부족하다. 최근 몇몇 중,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 밖에서 보다 전문적 체계적인 복지활동의 참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복지 활동을

다른 복지 분야들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인식과 장애인 복지 정책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체계적인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복지선교를 펼칠 수 없다.

따라서 발표자는 오늘의 과제로서 장애인 복지 선교의 실천이념과 원칙, 필요성과 더불어 한국교회 장애인 복지 선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선교 현장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장애인 복지 선교에 대한 이해

### 1) 장애인 복지 선교의 개념

장애인 복지 선교란 교회의 여러 기능 중 선교에 속한다. “선교”란 라틴어 missio에서 온 것으로 “맡겨진 일, 임무”를 의미한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성서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선교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장애인 복지를 말할 때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에는 장애인을 특이하거나 별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장애인 역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동인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인원을 가졌고,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인 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심신에 장애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장애인인 것이다. 결국 성서는 장애의 개념을 전인적으로 보고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첫째,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다. 둘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출애굽기 4장11절)라는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건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쁘신 뜻에 의해 장애인을 존재케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셋째, 예언서에서 하나님 나라 도래의 표상인 소망의 대상으로 보는 장애인관이다. 넷째,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자보호사상이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인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현대에서도 약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개신교인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약자들의 상황을 살펴야 된다. 그들의 외침에 귀를 열고, 손을 넓게 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이고 도리이며 당연한 책임이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잘 드러난다.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한 사명을 자신의 사명의 핵심에 포함시켰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또한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의 죄 때문이라는 제자들의 잘못된 선입관을 수정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고, 장애의 원인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눅 9:3)고 말씀하신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며 복음을 증거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장애인선교는 복지를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는 교회의 존재이유에 해당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2) 장애인 복지선교의 원칙

장애인을 ‘위한(for)’ 사역이 아니라 장애인과 ‘더불어(with)’ 이루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 줄 수 있다.

교회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주류(主流)사회에 통합되어 일상적인 경험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능한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자원은 많은 자원을 필요하므로 동원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자원과 연결시켜주도록 한다. 넷째, 소그룹 또는 전체 교회 조직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의 종류와 특성, 장애인의 욕구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곱째, 장애의 문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부담이므로 이들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홍보와 교육사업 등 구체적인 노력을 교회가 주도한다.

### 3) 장애인 복지선교의 필요성

교회의 장애인 복지선교 원칙이 장애인과 더불어 이루어 가는 장애인통합이고, 장애인 복지선교의 실천이념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중심에서 출발되어야 되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선교의 사명 역시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기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진기지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자원을 갖고 있다.

교회는 장애인 복지선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삶을 영위하도록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생명이라는 가치관과 그들이 어려움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의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장애관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에서는 설교, 성경공부, 특수 선교활동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간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에 대한 교인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만여명의 개신교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그들의 인간존엄성을 인정해 준다면, 개신교인 한 사람이 자기 이웃 세 사람을 설득시켜

편견을 버리게 한다면, 온 국민의 편견이 없어지게 되며, 이로써 장애인들은 보다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셋째는 교회의 시설을 장애인의 사용에 맞게끔 한다. 장애인들의 교회출석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을 하는 결과가 되고, 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교인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교회의 시설적 배려 없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회의 시설은 장애인 자신들이나 그들이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기에 결국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결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넷째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여러 단체나 조직망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가정을 돕는 일이다. 교회는 물질적 원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력 원조의 형식으로 생명자원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는 장애인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취급했는데, 이제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에 교회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현재의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 있어야 할 입법 조치에 대하여서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과 생명의 정신이 모든 입법 과정과 법 집행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직·간접으로 대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에 절대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장학 사업을 통해 잘 훈련받은 인력을 지역사회 장애인기관에 비치시켜야 한다. 장애인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장애인사역에 통찰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존속하고 더욱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4) 장애인 복지선교의 실천이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복지선교의 실천은 한마디로 ‘서비스를 주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입장’ 즉 철저히 클라이언트인 장애인 중심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선교의 실천이념은 다음과 같은 자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첫째,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권리와 책임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시켜 주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직업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정보와 문화적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와 문화는 장애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철저하게 강조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교회 내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모습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하게 되고 나아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고통 받지 않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 2. 장애인 복지선교의 현황과 문제점

### 1) 한국교회 장애인 복지선교의 일반적 현황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활동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교회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고, 한국교회의 재정예산 중에 사회복지(사회봉사)활동에 쓰는 비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회의 장애인 복지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한국개신교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국 개신교 13개 주요교단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신교사회복지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전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의 활동정도를 질문한 결과 활발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7.8%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조한 경우라고 응답한 사람은 72.2%로 나타났다.

2005년도 교회재정 결산 액의 평균을 보면 교역자 생활비가 2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회 유지비가 20.5%, 건물건축 및 시설확장 13.7%, 전도 및 선교는 13.4%, 교육

및 문화산업 10.8%, 구제 및 사회봉사 10.6%, 예배 및 설교 7.9%순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활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노인 분야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 18.0%, 청소년 15.12%, 지역주민 분야 11.6%순이었다. 장애인 분야는 7.5%로 청년 분야 0.2%와 함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인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복지 참여활동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분야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각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 중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 장학사업(201명)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장애인 시설 지원(141명)이며, 교회 시설 개방(105명)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설 지원과 노력 봉사(77명)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시혜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장애인 기능 봉사(10명)는 실시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시설지원을 위한 금품 전달 또는 교인들이나 선교회를 통한 노력봉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여가와 관광 등 일회적 시설방문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소명을 갖고 실천해야 할 사회복지 활동의 영역으로는 노인분야(33%), 청소년 분야(21.7%), 아동분야(14.3%), 기타분야(12.9%), 장애인분야(11.4%), 지역주민분야(5.8%)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복지(봉사) 활동 대상으로 노인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장애인은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에 비해 교회의 복지활동 대상에서 여전히 소홀히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사회 복지 선교는 개신교의 경우 각 교단 혹은 개별 교회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은 주교회의의 사회 복지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개신교 장로교의 경우 1971년 총회에서 사회 선언 지침을 마련하였고, 예수교 장로교(통합)의 경우 1984년 총회에서 사회 선교 지침을 마련한 뒤 1986년 총회에서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세군은 특유의 조직적 특성에다가 사회봉사를 가장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나머지 교단들은 대개 개 교회 중심으로 주로 담임목회자의 의지에 따라서 ① 교인을 위한 구제사업, ② 불우이웃 돕기, 자선, 긴급구호 등의 단순구제사업, ③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유아원, 노인학교 등), ④ 전문적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회 복지 선교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기보다

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 교회의 사회 복지선교 프로그램은 아동복지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선교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역 사회 복지 선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선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대체로 예배에 치우쳐있어 장애인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 2) 장애인 복지 선교에 나타난 문제점

일반적으로 개신교 사회 복지 활동이 타종교나 일반 민간 단체들의 활동과 비교할 때,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하지만 개신교의 복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극히 적다는 비판을 받고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교회의 개신교 사회 복지 활동의 문제점과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가 물질, 인적지원에 대하여서 소극적이고 인색하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편하고 쉬운 프로그램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나 교정 복지 같은 프로그램은 아직 미약하다는 것이다. 구조적 요인은 첫째,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복음과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반사회적, 탈 역사적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외면하게 한다. 둘째, 수직적인 사랑만을 강조하여 수평적 사랑에 소홀하였다. 셋째, 한국 교회는 인적, 물질 자원을 자기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만 투자 및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교회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아직도 단순 구호적 사업에 머물러 있다

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

다. 사회 봉사비 지출이 대체로 빈약하고, 이 빈약한 예산도 교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사회봉사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40.1%)

마.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위한 헌금이 단순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수제구호 현금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등)

바.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교회의 시설이 미비하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에 미흡한 이유와 함께, 물적 및 인적자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이유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사회 복지 선교에 대한 동기가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은 열심이지만 교회의 여러 자원 즉 교회재정과 교회시설, 교회 안에 있는 전문 인력을 사회복지활동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의 문제로는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선교방법에 문제를 안고 있다. 실천의 방법은 동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가 베푸는 자선이 종교인을 만드는 종교적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감상적인 동정심만으로 이웃을 원조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존심을 키우게 해서는 안 된다.

③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나 개인 편리대로 원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조그만 봉사를 하면서 생색을 많이 내어서는 안 된다.

⑤ 도움을 주면서 피 원조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면 안 된다.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동기와 방법이 올바르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활성화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로는 사회복지선교실천에 있어 전문 지도력과 조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교회 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원을 개발하면 동원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의 발굴 또는 조직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의 지적이다. 따라서 교회 내 전문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부서는 가능하면 사회복지를 공부한 제직이 있으면 부서의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거나 특정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이나 경험이 있는 제직이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여건에서 최적의 교인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전문적인 면에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면 인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지역사회복지관의 관련 전문가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선교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활성화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교회 장애인 복지활동의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 활동의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이며,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경재의 ‘교회의 장애인 복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2001년)에 보면,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전문 인력의 부족(31.7%), 재정부족(29.3%), 교인 인식부족(1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3)</sup>

또 다른 한 연구논문에서, 서울 지역 5개 노회 114개 교회 중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28개 교회로 나타났는데(23.7%), 장애인 복지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28개 교회 중에서 실무자와 자원봉사자가 동시에 있는 교회는 4곳, 실무자만 있는 교회는 5곳, 자원봉사자만 있는 경우는 5곳, 그리고 실무자도 자원봉사자도 없는 교회는 14곳(5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고, 단지 임기응변 식 내지 간접 지원 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34)</sup>

교회의 장애인 복지활동은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장애인에 대한 지식,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복지선교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교회의 장애인 복지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전문적인 유급 전담사역자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자원봉사 인력들을 훈련시켜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보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개신교 사랑의 정신과 함께 전문 기술을 습득케 하여 장애인 복지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장애인 복지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리고 일시적,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활용과 훈련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네 번째 문제로는 교회와 교인들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이다.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평등사상과 약자사랑을 강조해야 될 교회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장애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동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선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태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하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만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1) 이경재, 앞의 글, p.38.

34) 남재중, “지역교회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61.

한국 교회는 장애인을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 또는 함께 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짐스러운 하나의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모습이 있다고 하겠다. 당연히 함께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장애인 선교회 중심, 장애인 교회 등 격리된 형태로 장애인 복지선교가 추진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수정되지 않고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자리를 잡기 어렵고 또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

다른 활동 분야에 비해 장애인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교회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직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교회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의 계단, 화장실, 의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교회가 아주 드물고 교회건축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확보되지 않고는 장애인 복지선교는 구호에 그치는 걸음마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여섯 번째 문제로는 장애인 복지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최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선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공존하면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과 함께 장애인 복지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된다.

### 3. 장애인 복지 선교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 1)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활동의 교육과 훈련

장애인에 대한 정의, 원인, 분류, 치료 등을 일반 비(非)전문인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선교의 대상과 분야를 선정하면 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장애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장애인을 돕는 여러 전문요원들과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복지선교 실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지식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들의 복지적 욕구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책개발에 반영하는 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을 늘리도록 돕는 일 등도 교회의 역할이다. 이러한 실천 활동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실체이며 사회적 표현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교회 내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공부, 설교, 기도, 토론, 훈련 등을 통한 신앙적 차원에서 동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과 가족, 전문요원과 비(非)전문요원이 헌신하는 현장에 교인들을 노출시킴으로써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식화 작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을 발견하여 시정하고 또한 강한 동기를 뒷받침해 줄 능력을 키우려면 조직적인 훈련이 이론과 기술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시설을 활용하여 전문인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비전문인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복지선교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교회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한 동기와 유능한 능력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 동기는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복지선교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다.

우선 교회는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정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더불어 전문요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복지선교 실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시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복지선교 실천이 유지되어야 한다.

## 2) 교회자원의 활용과 전문 인력 양성

### (1) 교회자원의 활용

교회 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과 밖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인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교회에는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는 의료인,

교육자, 법률 종사자 등의 전문 인력과 준전문 인력, 그리고 봉사의 소양을 갖춘 다수의 인적자원이 어느 공동체보다 풍부하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장애인 복지 선교현장으로 이끌어낼 때 진정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장애인 복지는 활성화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무수한 조직체로 구성된 조직 공동체이다. 이 조직체가 생명을 봉사하는 소단위 조직체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큰일을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기존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의 자원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교회가 장애인 복지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즉 교회시설을 그리스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생활’, ‘재활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교회재정의 확보와 함께 재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교회가 장애인 복지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회복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책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교인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현금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선교비용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금을 한 교인들에게 보람을 줄 것이고 사회 복지 선교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재정확보는 동기부여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재정은 투명하고도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문 인력의 양성

한국교회 내에서 장애인사역에 헌신하려고 하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훈련과정과 헌신에 있어서의 척박한 사역비 문제이다. 그래서 장애인선교를 하는 사람에게 사역비 후원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 또한 많은 후원자들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물질적 서비스만 고려하고 있을 뿐이지 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홍보 등과 같이 전문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에까지는 시각을 넓히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사역의 전문인력양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의 투자가 적으면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복음과 복지서비스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시안적 서비스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들의 총체적인 재활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의 장애인 복지활동은 지나치게 장애인의 의식주, 의료, 교육, 직업, 오락, 보호 등에 관련된 직접적인 참여활동을 하는데 미흡하였다. 이제 교회는 장애인의 복지의 직접적인

참여활동을 위해 특수교육분야, 장애인전문 사회복지 분야 등, 의도적인 장학 사업을 통해 잘 훈련받은 전문 인력을 지역사회 장애인 기관에 배치시켜야 한다. 특별히 가난한 장애인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장애인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개신교장애인 복지에 통찰을 갖도록 노력하는 일을 할 필요도 있다.<sup>35)</sup>

전문 인력으로 목회자로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나,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앙인 중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을 채용하여 교회의 지역 사회 복지 선교 사역을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개신교인으로서 신학 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졸업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을 교회가 적극 채용하여 교회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활동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교역자들을 일반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정규 신학 과정을 마친 장애인 교역자들을 일반교회의 목회현장에 참여시켜,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장애인 복지선교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현재 장애인 교역자들이 장애인 특수선교분야에서만 사역하고 있고, 일반교회에서는 거의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은 이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장애인 교역자들만이 갖는 장점과 능력을 발견해야 하고, 본인이 겪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성도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는 등,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사회에서도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법으로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를 선도하고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장애인교역자들을 일반교회에서 채용하여 동역하기를 주저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가 장애인교역자들을 일반교회의 장애인 복지선교사역의 전담사역자들로 적극 활용하여 그들과 함께 목회동역의 파트너로 동참시킨다면 교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교역자들이 소명과 희망을 가지고서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교회의 장애인 복지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관 및 시설과의 협력

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기관 및 장애인 시설과 협력할 수 있다. 교회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려고만 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개 교회주의에서 기인하는데, 교회가 하는 복지활동을 통한 성과들을 교회 안으로 집중하려 하고, 교회의 양적 성장에

35) 이준우, “장애인과 개신교사회복지”, 「개신교사회복지총람」, (한국개신교사회복지협의회 편, 2007), p.417.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시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고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복지활동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재원의 부담이나 경험부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4) 지역 내 타 교회와의 협력과 연대

교회는 장애인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타 교회들과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가지고 적극적인 연합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복지활동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교회들이 복지선교협의체를 조직하여 함께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복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하여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공동 실시하는 것도 교회연합과 사회적 신뢰도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지역 안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타 교회와 함께 또는 같은 지역에 있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하나의 복지프로그램을 정기적·지속적으로 공동 실시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 이런 교회연합적인 공동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은 서로의 경쟁과 마음의 벽들을 허물고 참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에큐메니칼(교회 연합)적인 사회 복지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일치와 성도교제의 건강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지역교회들이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과 연대로 함께하여 복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맺는 말

현재 한국 개신교는 매우 다양한 교파로 나누어져 있다. 교리와 전통에 있어서 차이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굳어져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오늘날 이들의 연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개신교 복지 선교에는 교리나 전통에서의 차이가 없다. 모든 교인들이, 심지어 일반 불신자들도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개신교 복지 선교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결실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 복지 선교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다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인 복지 선교의 기초는 영성이 되어야 한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채널이다. 장애인선교와 복지는 사역 자체가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고와 헌신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역이다. 그렇기에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어렵다. 또한 성경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신앙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에 영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전문화되어야 한다. 현재 개신교의 장애인 복지는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 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비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랑과 복음이 중요하지만 감상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복음만 가지고는 오히려 재활을 해칠 수 있기에 장애인 복지선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자원을 조직화 및 체계화 시키고 과학적인 방법론도 도입해야 한다. 즉, 종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문성 있는 기관과 인력 양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야 한다. 교회, 개신교기관, 선교기관, 개신교 복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역도 극대화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선교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적 사업의 욕심을 버리고 한 지역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사설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대학원)에서조차 장애인 신학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장애인 사역과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신학의 정립이 시급하고 이것을 신학대학(대학원)에서부터 가르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목회자들의 소극성 때문에 장애인 선교가 늦어진 것도 사실이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가지는 인식과 태도는 교회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와 업적주의에 의한 경쟁적 목회, 그리고 성장 콤플렉스에 빠져 오직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관심이 없는 한 장애인문제는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교회는 장애인 복지 선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봉사자나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프로그램 등 장애인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들의 취업과 고용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성도들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기업에 취업을 알선 하거나 연결 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진정 교회가 장애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장애인들을 그저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왔다. 단지 적은 예산으로 일시적 방문으로 구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한국교회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비약적인 양적 성장과 놀라운 부흥의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은 소외되었고 그 결과 장애인들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현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장애인 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장애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지역 교회는 장애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수용하지 못하고, 장애인 복지 활동에도 소홀히 하였다. 장애인들은 영혼의 갈망을 희구하며 현재 장애인 교회를 형성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이제 장애인 복지 선교는 장애인 선교단체나 장애인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활동에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무게 중심축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이 필요하고, 교회도 장애인들과 통합하여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의 흐름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정상적인 삶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통합과 참여를 지향해가고 있음을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정책 결정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함께 마음과 뜻과 사랑을 모아 장애인 복지 활동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명과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말을 맺고자 한다.